

2012. 9. 25.(화) 09:30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 7
3.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4.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나. 제출자 : 이성복 · 조선제 · 류영수 · 백범영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마. 의안번호 : 제2012 - 60호

2.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1. 10. 17) 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3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의거 집행기관의 범위에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포함
- 정보공개조례 적용범위 신설 : 출자·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나. 정보공개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정함
- 정보공개책임관 역할 규정

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기준을 규정(안 제6조)

- 감면대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준용
- 감면비율 : ‘거창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 감면조건 : 소명자료 첨부 요

라.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정함(안 제7조, 별표)

- 공표대상 : 92개 항목
- 반영방법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반영
 - ▶ 그 밖의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표대상에 추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거창군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전담 창구를 지정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시행령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 학술용 등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정보의 대상, 공개범위, 주기, 시기 등) 군민에게 공표(92개 항목)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거창군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등의 정보의 공표방법을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 주기 및 시기,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표기관 및 부서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심의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위촉직 4명(외부전문가 3명, 군의원1)과 당연직 3명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안 제12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으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제출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등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7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안 19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 나. 제출자 : 김재권, 강철우, 안철우, 이애숙
-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 마. 의안번호 : 제2012 - 61호

2. 제정이유

- 현재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기능이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 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수행 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3. 주요내용

- 가. 각종 용역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용역심의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둠(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과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함.

다.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용역기간의 적합성,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및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함.

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함(안 제7조)

-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하는 규정을 정함

마.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둠(안 제10조)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 대상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할 때는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바. 용역과제 심의요청 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할 의안의 제안이유와 사업 필요성 등을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용역결과 관리 규정을 둠(안 제14조)

-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기능이 없는 실정에 있어 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 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역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 위원은 위촉직 5명이상(군의원1, 용역분야 전문종사자4명 이상) 과 당연직 5명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고 군의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기 및 직위 재직기간으로 규정함
- **안 제5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용역심의 대상으로
 - ▶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 : 2천만원 이상
 - ▶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 : 1건당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 ▶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
 -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척·회피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결과조치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도록 규정을 함
 -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 마. 의안번호 : 제2012 - 62호

2. 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안 별표 1)

나.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군수가 직접 수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련시설 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

라. 수련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
-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음

마.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을 신규로 건립함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과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별표1)를 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 등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시설의 장을 두며, 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련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물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으며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고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 **안 제16조**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9.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 마. 의안번호 : 제2012 - 63호

2. 개정이유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등을 심의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의원, 교육공무원, 교장, 교원, 경찰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비밀준수 의무를 정함(안 제12조)

-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고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법률에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뒤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